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가경정 제1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69,157,784	38,074,734
일반회계	865,499,400	25,964,982
특별회계	403,658,384	12,109,752
공기업특별회계	132,817,250	3,984,518
상수도사업	60,880,731	1,826,422
하수도사업	71,936,519	2,158,096
기타특별회계	270,841,134	8,125,234
공유재산관리	41,909,038	1,257,271
의료급여기금	4,361,849	130,855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315,405	39,4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702,989	21,090
도시재정비촉진	10,590,681	317,720
도시개발	22,127,787	663,834
기반시설	1,843,960	55,319
교통사업	39,972,935	1,199,188
도시철도건설사업	148,016,490	4,440,49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17,57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5,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